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4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임기가 없는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

- 안전 발생시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정책 기획관으로 하향하고, 위원 자격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3.4.13.~5.3.) 결과 : 의견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정상영(☎2133-6732)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이 되고”를 “정책기획관이 맡고”로, “자가 된다”를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소속 업무관련 4급 이상 공무원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장은 <u>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u></p> <p>1. <u>책임운영기관 감독부서의 본부장·국장 및 정책기획관</u></p> <p>2. (생략)</p> <p>⑤ <u>제4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⑥ ~ ⑦ (생략)</p>	<p>제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정책기획관이 맡고-----</u> ----- <u>사람</u> <u>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u></p> <p>1. <u>서울특별시 소속 업무관련 4급 이상 공무원</u></p> <p>2.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u></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위원의 자격 규정 정비는 제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정상영 (☎ 2133-6732)